

AI 발생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 조정

출처 : 농식품부 (2017.6.8)

당 초	조 정				
사업주관 : 시·도지사	좌 동				
지원대상 : AI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부화장, 도계(업)장, 유기비료공장, 계란집하장, 닭·오리 가공공장, 사료공장	[추가] 지원대상 : AI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부화장, 도계(업)장, 유기비료공장, 계란집하장, 닭·오리 가공공장, 사료공장, <u>가축거래상인(가금)</u>				
지원조건 : 연리 1.8%, 2년거치 3년상환	좌 동				
재원 : 농특회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	좌 동				
지원내용 : 원료구입, 인건비,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	좌 동				
지원한도액 : 영업 중단기간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	[추가]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관련 경영체</th> <th>지원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축거래상인 (가금)</td> <td>최근1년간 일일 평균 거래실적 x 정지일 x 산닭가격(최근3년평균) * 토종닭 한 마리 평균 체중 : 2.5kg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관련 경영체	지원한도액	가축거래상인 (가금)	최근1년간 일일 평균 거래실적 x 정지일 x 산닭가격(최근3년평균) * 토종닭 한 마리 평균 체중 : 2.5kg
관련 경영체	지원한도액				
가축거래상인 (가금)	최근1년간 일일 평균 거래실적 x 정지일 x 산닭가격(최근3년평균) * 토종닭 한 마리 평균 체중 : 2.5kg				



